

◎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-310호

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 「은행법 시행령」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4일

금융위원회

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
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함
- 2015년 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 결과,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함

2. 주요내용

- 「은행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의 기존 규제*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기한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한,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IT보안 관련 의무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(100-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)

○ 전 화 : 02-2156-9622

○ 팩 스 : 02-2156-9619

○ 이메일 : limss21c@korea.kr

※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fsc.go.kr>)를 참조하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(☎02-2156-96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